

자동색상배합기 전용 염모제 심사 방안

□ 일반사항

- 자동색상배합기에 사용하는 염모제 모두를 세부구성(용기)으로 하여 하나의 품목으로 심사
 - 세부구성별 염모제 포함 심사

□ 원료성분 및 배합비율

- 세부구성별 성분명, 배합목적, 분량 및 규격 기재
 - 세부구성 배합별 사용상의 제한이 되는 원료 분량이 배합한도 초과여부 확인

□ 효능·효과

- 세부구성 색상을 계통(15개)*으로 기재하고 계통에 따른 염모효력 시험자료 제출
 - 배합기로 혼합하여 염모효력이 가능한 모든 색상 범위를 색상표로 제출
- * (계통) 공공디자인 색채표준가이드(빨강, 주황, 노랑, 연두, 초록, 청록, 파랑, 남색, 보라, 자주, 분홍, 갈색, 흰색, 회색, 검정)

□ 용법·용량

- 자동색상배합기를 사용하여 배합한 1제 혼합물*과 2제 혼합물**에 대한 용법용량 기재
- * 자동화기기에서 매뉴얼에 따라 각 계통 색상 및 1제 희석제를 배합한 혼합물
- ** 산화제 및 2제 희석제를 배합한 혼합물

<작성예시>

매뉴얼에 따라 배합한 1제 혼합물과 2제 혼합물(H_2O_2 0.1~11.9 w/w% 함유)을
○ : ○의 비율로 완전히 혼합하여 모발에 바른다. <생략>

□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

- 일반 염모제와 동일하게 작성하나 자동색상배합기 특성을 반영하여 추가 가능

* 「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」염모제

□ 기준 및 시험방법

- 각 세부구성별로 확인시험, 염모력 시험 설정

□ 참조란 기재사항

- 자동색상배합기 정보(기기명, 모델 등)